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·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 【2022. 9. 15.(목) 10:00】

2022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 정·재 무 위 원 회

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2022년 9월 15일 전문위원 장 석 현

I. 안 건 명 : 2022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田. 제출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
-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Ⅲ.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: 1,121억 1,083만 5천원

O 추가경정예산의 규모(총괄)

(단위:천원)

구	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비교증감	증감률
합	계	1,351,096,746	1,238,985,911	112,110,835	9.05%
일반	:회계	1,330,907,913	1,219,835,977	111,071,936	9.11%
특별	회계	20,188,833	19,149,934	1,038,899	5.43%
의료급	급여기금	2,295,536	2,172,370	123,166	5.67%
주	차 장	17,893,297	16,977,564	915,733	5.39%

O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,121억 1,083만 5천원이 증가한 1조 3,510억 9,674만 6천원임

IV.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1. 일반회계 세입: 해당없음

2. 일반회계 세출

◈ 세출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(%)
총 계	28,970,427	18,970,427	10,000,000	52.71
신청사건립추진단	28,970,427	18,970,427	10,000,000	52.71

○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89억 7,042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 189억 7,042만 7천원 대비 100억원 (52.71%) 증가함

3.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

❖ 자체사업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
합 계	20,000,000	10,000,000	10,000,000
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	20,000,000	10,000,000	10,000,000

O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함

V.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(공용의청사건립기금)

1. 기금설치 개요

O 기 금 명: 공용의청사건립기금

O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설치목적: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·운용

O 설치년도: 1997년

O 소관부서: 신청사건립추진단

2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	2021년도 말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도 말
구 분	조성액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조성액
공용의청사 건립기금	88,288,497	21,440,578	6,751,500	14,689,078	102,977,575

O 공용의청사건립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,029억 7,75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8,90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음

3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◈ 기금운용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109,729,075	99,729,075	10,000,000
전입금	20,000,000	10,000,000	10,000,000
예치금회수	88,288,497	88,288,497	0
이자수입	1,140,578	1,140,578	0

○ 수입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997억 2,907만 5천원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1,097억 2,90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<u>100억원 증액</u>하여 계상함

◈ 기금운용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109,729,075	99,729,075	10,000,000
비융자성사업비	6,751,500	6,751,500	0
예치금	102,977,575	92,977,575	10,000,000

○ 지출계획의 변경은

청사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치금 <u>100억원을</u> <u>증액</u>하여 운용할 계획임

VI. 종합의견

- 본 안건은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고,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- 특히,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
-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예치금) 지출액을 당초(929억 7,757만 5천원) 대비 10.76%, 100억원을 증액하여 1,029억 7,757만 5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1)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20%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님
- 다만, 신청사건립사업은 우리구의 주요 투자사업이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기금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강서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^{1) 「}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<u>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</u> <u>받아야 한다.</u> <u>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</u>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^{1.「}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^{2.「}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참고

예산과 기금의 비교

〈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〉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■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	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보유 운용 	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	•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	•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 	좌 동	•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,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 	좌 동	•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•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	• 특정한 수입과 지출 의 연계	좌 동
계획변경	• 추경예산 편성	좌 동	 주요항목(분야・부문 · 정책사업) 지출금액 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 결 산	• 지방의회 심의·승인	좌 동	• 좌 동